

## ■ 대관 규정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전국국어교사모임(이하 '모임'이라 한다)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관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대관신청)

대관 예정 전일까지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3조(대관의 우선순위)

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, 신청을 먼저 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.

### 제4조(대관신청의 제한 및 취소)

1. 모임의 행사가 예상되는 날의 시간에 대해서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.
2. 모임은 대관 승인 후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관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5조(대관 승인)

1. 모임은 신청인의 대관 신청 접수 후 이를 심사하여 대관 승인의 가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2. 모임은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### 제6조(대관료)

1. 대관자는 사용일 전에 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.
2. 대관료는 다음 표와 같다.

| 구분 | 1일<br>(09:00~22:00) | 오전<br>(09:00~12:00) | 오후<br>(12:00~18:00) | 야간<br>(18:00~22:00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평일 | 100,000             | 10,000/1시간          | 10,000/1시간          | 15,000/1시간          |
| 휴일 | 120,000             | 10,000/1시간          | 15,000/1시간          | 20,000/1시간          |

※ 단위 : 원

3.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.

- ① 모임의 하위 체계에 속한 모임이 주최하는 행사
- ② 정회원이 학생을 인솔하는 행사
- ③ 사무처 운영위에서 승인한 행사

### 제7조(대관의 취소 및 변경)

1.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임에 대관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.
2. 모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.
  - ① 사용일 3일 이전 대관 취소: 전액 환불
  - ② 사용일 2일~1일 이내 대관 취소: 90% 환불

③ 사용일 대관 취소: 환불 불가

④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모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: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환불

#### 제8조(대관자의 의무)

1. 대관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.
2. 현수막, 포스터, 안내문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 사전에 모임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모임은 사전 통보 없이 이를 제거할 수 있다.
3. 대관자는 행사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종료 후 정리하여야 한다.
4.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모임 시설 사용 제한 및 차기 대관 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부칙-이 규정은 201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